

제주시공고 제2026-3176호
(조달청 공고번호 : R26BK01717465-000)

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

※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건설 업역규제 폐지)에 따른 **건설업 상호진출 허용** **공사**로 관련 규정(법령, 예규, 고시 등),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<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.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,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>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공 사 명 : 연동 1962-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공사

나. 공사내용 : 재활용도움센터 신축공사 1식

다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90일

라. 추정금액 : 금197,621,000원

【(추정가격) 171,610,909원 + (부가가치세) 17,161,091원 + (도급자설치관급금액) 8,849,000원】

※ 관급자설치관급금액 : -원

마. 기초금액 : 금188,772,000원

바.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비율

구 분	건설업종	추정금액(원)	추정가격(원)	비율
종합 건설업	건축공사업(토목건축공사업)	197,621,000	171,610,909	100 %
전문 건설업	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	148,215,750	128,708,182	75 %
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	49,405,250	42,902,727	25 %

2. 입찰참가 기간 : 2026. 9. 10. 10:00 ~ 2026. 9. 15. 14:00

3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. 9. 16. 15: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

4. 입찰참가 자격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(사업자등록)을 갖추고,

나.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(토목건축공사업 포함) 등록 을 필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, 철근·콘크리 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

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
- 다.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참가자격 대상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**해당 종합공사(건축공사업)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**을 갖추어야 하고,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,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**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**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

- 라. **업체의 상호(법인명칭) 및 대표자(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)의 성명이 변경**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**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**됩니다.

- 마.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"<http://www.g2b.go.kr>"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.

※전자입찰 이용안내 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-0800)

- 바. 『지방계약법』제31조의5 및 『지방계약법 시행령』제93조제1항에 따라 '조세포탈등을 한 자'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5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본 견적 제출은 **총액 견적입찰**로서 행정안전부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수의계약 운영요령)」에 따라 **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"보험료 등"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**부터 순서대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수의계약 운영요령) <별표 1>」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.

※ "보험료 등"의 상세내용은 "6.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" 참조

- 나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±3%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

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다수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다.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"<http://www.g2b.go.kr>"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.

라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**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**

마.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,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.

6.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

가.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**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퇴직공제부금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 (이하"보험료 등"이라 한다)**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
<보험료 등 계상내역>

(단위 : 원)

합계	국민건강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퇴직공제 부금비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
11,926,024	1,882,912	247,414	2,487,854	1,204,645	3,617,493	2,485,706	-

나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.노인장기요양보험료.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.

다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」제10조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.

라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,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.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,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마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.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,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

바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.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, 정산 등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에 따릅니다.

사.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.

7.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

가.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 등) 충족여부를 조사하고,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, **전문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(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)**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.

*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

-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(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):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
- 가. 기술능력: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·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
- 나. 자본금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1) 법인인 경우: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**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** [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,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,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(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)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. 이하 같음]
 - 2) 개인인 경우: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**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**
- ※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(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)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

8. 입찰보증금 및 귀속

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,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

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%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9. 입찰의 무효

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,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.

10.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

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, 시방서 등은 **우리시 생활환경과 (담당자 김윤희 ☎728-3162)**,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**우리시 총무과(담당자 김두영 ☎728-2085)**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11. 하도급 관련사항

가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,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에 따릅니다.

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(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)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·해지 및 「지방계약법」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'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'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, 자재납품, 장비사용 내역,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

다. 하도급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라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 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,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마.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청렴계약 이행준수 :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"청렴계약이행각서"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가.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,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,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(<http://jejusi.go.kr>)상의 "청렴계약제 시행안내"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"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", "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", "청렴계약 이행서약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3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『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나. 계약업체는 『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』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다.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·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」 및 「안전보건관리계획서」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와「안전보건관리계획서」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.

14. 기 타

가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**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** 계약하여야 합니다.

나. 본 건적공고의 낙찰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,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(국민권익위원회 예규-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)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.5%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.

라.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,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조건,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(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)과 첨부된 **계약이행특수조건**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- 마.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』에 근거한 「**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**」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바. 본 공사는 **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,「클린페이 플러스」시스템을 이용**하는 사업입니다.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,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·지급이 의무화 되는 『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』가 시행됨에 따라 **우리 시에서는 “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” 사용을 의무화** 합니다.
- 사. 『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』에 따라 계약상대자는(하수급인 포함)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,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 **또한,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, 건설기계대여업자,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,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**하여야 합니다.
- 아. 기타 『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』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『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』참고 하시기 바라며,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자.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『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『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제3조의 2에서 규정한 “표준 하도급계약서” 사용과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35조 제2항에 따른 “**하도급 대금 직접지급**”이 원칙이며,「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」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(“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” 또는 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”)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차.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(입찰참가자격의 등록)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- 카.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,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타.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, 전자입찰 절차 미숙,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·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**공직자비리신고**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**공익제보**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제주특별자치도) <https://www.jeju.go.kr/online/hotline/corruption/guide.htm>

(감 사 위 원 회) <https://audit.jeju.go.kr/together/auditreport/report.htm>

2026. 9. 9.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